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입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396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가 기존에 임의 규정이던 것을 “의무사항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화장실의 위생 및 미관 개선과 이용 편의 등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“휴지통 없는 화장실” 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- 서울시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